

#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김춘곤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437 |
|----------|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1월 26일

발 의 자: 김춘곤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길영,  
김동욱, 김용일, 김용호,  
김형재, 박강산, 박성연,  
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 
서준오, 소영철, 신복자,  
옥재은, 유정인, 윤기섭,  
윤종복, 이소라, 이종태,  
최민규, 최진혁, 한·신  
의원(24명)

## 1. 제안이유

-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살해, 유기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, 심지어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도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
- 이에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동물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나.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라. 동물학대 예방 교육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위  
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동물학대”란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2와 같이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, 굶주림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롭게 공존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
2.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
3.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재정 지원)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사무위탁)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동물보호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, 유관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 번호

2023010600000010

## 미참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김춘곤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선동규 주무관

접수일 : 2023.01.06.

회신일 : 2023.01.12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, 이에 학교 관련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(재정지원), 제6조(사무의 위탁)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

※ 같은 조례안 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, 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규정은 별도 예산 수반 없이 자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제외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(제3조제1항2호)

-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(재정지원), 제6조(사무의 위탁) 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관련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고 지원내용 및 위탁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움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선동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abasiclife@seoul.go.kr